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연저작물 녹음·녹화 금지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4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실연저작물 녹음·녹화 금지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2. 27.

다. 회 부 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용도·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

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Ⅲ. 검토의견

1. 실연저작물 녹음·녹화 금지(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공연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안 제104조의6제2항, 안 제137조제1항제3호의4).
- 실연저작물 녹음·녹화 금지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40조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6(<u>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u>) (생략)	제104조의6(<u>영상저작물 및 공연 녹화 등의 금지</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누구든지 위치·용도·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u>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략) 3의3. <u>제104조의6</u>을 위반한 자 <u><신설></u> 4. ~ 7. (생략) ② (생략)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u>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u>,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u>는 공연(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없이 녹음·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37조(벌칙) ①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u>제104조의6제1항</u>----- 3의4. <u>제104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u>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0조(고소)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u>, <u>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u>-----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을 저작권 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등)과 저작권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를 녹음·녹화하여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¹⁾는 허용하고 있음.²⁾ 현행법에 따를 때 개인적 감상 목적의 녹음·녹화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물이라도 이를 유포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다만,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공중송신을 금지하고 있음(현행법 제104조의6³⁾).
- 최근 공연장에서 뮤지컬 등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이 판매되는 등 공연물의 내용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유출되는 사례⁴⁾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

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연장 등에서 이용규칙(약관)을 통하여 실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퇴장조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3)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데일리안, “오페라글라스에 캠코더가...교묘한 ‘눈속임’만 더해가는 밀녹·밀캠”, 2024. 12. 14, 주간조선, “공연업계 괴롭히는 암, ‘밀녹밀캠’”, 2024. 11. 30.

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제104조의6과 유사하게, 실연저작물의 녹음·녹화를 금지함으로써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⁵⁾

-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⁶⁾, 저작재산권자의 공중송신권⁷⁾, 실연자의 복제권⁸⁾, 실연자의 방송권⁹⁾, 실연자의 전송권¹⁰⁾ 등으로 보호하고 위반 시 벌칙¹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처벌 가능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은 실연저작물을 사적이용을 위해 녹음·녹화한 경우임.

5)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와 달리 개정안은 공중송신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6)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7)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8) 「저작권법」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9) 「저작권법」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저작권법」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11)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실연저작물을 사적이용을 위해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실연저작물을 촬영하는 행위가 사적이용을 위한 것인지 공중송신을 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공연장등에서의 촬영 행위를 일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규율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이 참고한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2011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것으로, 영화를 포함한 영상저작물 유통구조¹²⁾ 등을 고려하여 미수범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¹³⁾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화’에 대해서 무단촬영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공연’에 대한 촬영 금지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보임. 그러나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의 경우에도 공식 영상을 인터넷이나 유선방송 등 채널별로 시차를 두고 배급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영화와 마찬가지로 공연에 대한 녹음·녹화 금지를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12) 영화는 일반적으로 ‘영화관→DVD(또는 인터넷)→케이블 등 유선방송’ 등 창구별로 출시의 시차를 두고 배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상 유출 시 향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영상저작물의 녹화(영화 도촬)나 공중송신 행위가 일반적인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금지한 것은 도촬 당시에는 그것이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항변될 수 있으나, 일단 도촬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이후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적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함임.

13) 전제립, “저작재산권 벌칙 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p21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연 관련 저작권에 대한 국민 법의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녹음·녹화 금지 사전고지 주체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 명확히 하고, ‘사전 고지’와 ‘허락없이’ 문구는 표현이 중복되므로 ‘허락없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수용 의견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친고죄와 관련하여 파파라치 행위 등으로 공연 몰입감을 저해하는 부작용 방지 필요성, 공연별로 권리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벌 부과가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중송신과 미수범 관련하여 공중송신은 시도 즉시 그 행위가 완성되어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이도 현행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므로 미수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공중송신 및 미수범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실연저작물을 무단 녹음·녹화 및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388호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915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해외 사례

※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화’ 도촬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연’에 대한 촬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음

국가명	내용
일본	제4조(영화의 도촬에 관한 저작권법의 특례) ① <u>영화의 도촬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u>, 영화의 도촬을 행한 자에 대한 동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한 자, 제113조 제3항」은「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 ② <u>전항의 규정은 최초로 일본 국내의 영화관 등에 있어서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상영이 행해진 날부터 기산하여 8월을 경과한 영화와 관련된 영화의 도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2007))